

미래인문학연구센터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센터는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칭함) 연구처 부설미래인문학연구센터(Future Academy of Humanities 이하 “연구센터”라 칭함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센터는 미래의 인문학과 인문학의 미래에 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인문환경에 대응할 자료 구축 및 제공, 지속 가능한 학문생태계 관리 및 새로운 미래 문명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위치) 본 연구센터는 경희대학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에 지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본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자료의 수집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
2. 교육
3. 연구사업 수행과 간행물 발행
4. 사회 자문과 건의

제2장 조직

제5조(구성) 본 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연구센터장 1명
2. 연구부센터장 1명
3. 감사 2명
4. 각 연구실장
5. 고문
6. 간사
7. 연구원

제6조(기구) 본 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.

1. 운영위원회
2. 자문위원회
3. 연구실

제7조(연구센터장)

- ① 연구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「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학무부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연구센터장은 본 연구센터를 대표하며 연구센터의 구성 등 연구센터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연구부센터장, 연구실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.

제8조(연구부센터장)

- ① 연구부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연구원 중에서 연구센터장이 임명한다.
- ② 연구부센터장은 연구센터장을 보좌하고 연구센터장의 유고시에는 연구센터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- ③ 연구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감사)

- ① 본 연구센터의 업무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를 둔다.
-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센터장이 임명한다.

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연구실장)

- ① 연구실장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.
- ② 연구실장은 연구센터장을 보좌하고 각 연구실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1조(간사)

- ① 연구센터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전임교원 또는 연구원 중에서 연구센터장이 임명한다.
- ③ 간사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겸한다.

제12조(고문)

- ① 운영위원회는 인문학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내·외부 인사를 고문으로 추천할 수 있다.
- ② 고문은 연구센터장이 임명한다.
- 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(연구원 등) 본 연구센터에는 「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연구원을 두며 센터장이 임명한다.

제14조(운영위원회)

- ① 본 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둈다.
 1. 연구센터의 조직, 운영체계 및 기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2. 연구센터장 추천, 인사 관련 사항
 3. 연구센터의 연구방향 및 연구계획 결정
 4. 예산 및 결산
 5. 연구센터 관련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
 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센터장, 연구부센터장, 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센터장으로 하며, 운영위원은 연구원 중에서 연구센터장이 임명한다.
-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5조(자문위원회)

- ① 본 연구센터의 원활한 연구 활동과 부대사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자문위원은 박사급 이상의 내외부 인사 중 해당 의제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연구센터장이 위촉할 수 있다.

제16조(연구실)

본 연구센터의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각 전공 분야에 관한 연구실을 구성한다.

제3장 재정 및 기타

제17조(재정) 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교내연구비
2. 학술연구개발사업
3. 학술연구용역사업
4. 보조금 및 기부금
5. 기타의 수익금

제18조(회계)

- ① 본 연구센터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.
- ② 재원에 따라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·운영하며, 교비 또는 대외과제·용역 수주 등에 따른 경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③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
제19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